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320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(해제)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1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 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서해안선 51.6k (서울) 옹벽	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	한국도로공사	시설물 철거	—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